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57

발의연월일: 2021. 3. 12.

발 의 자:김선교·박대수·정운천

김예지 · 정찬민 · 김형동

김석기 · 윤창현 · 김용판

이철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「산림조합법」 제40조제10항 및 법 제40조의2제2항제4호는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과 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 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.

실제로 위 조항과 동일한 목적으로 규정된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 7조2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(헌법재판소 2020. 6. 25. 2018헌바 278)에 따라 개정되기도 하였음.

이에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자함.

주요내용

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,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함(안 제40조 및 제40조의2). 법률 제 호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제10항 중 "정관"을 "농림축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제40조의2제2항제4호 중 "정관"을 "농림축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선거운동의 제한) ① ~	제53조(선거운동의 제한) ① ~
⑨ (생 략)	⑨ (현행과 같음)
⑩ 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의	①
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	
한 사항은 <u>정관</u> 으로 정한다.	<u>농림축산식품부령</u>
제40조의2(기부행위의 제한) ①	제40조의2(기부행위의 제한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	②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	
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	4
에 준하는 행위로서 <u>정관</u> 으로	<u>농</u> 림축산식품
정하는 행위	<u> 부령</u>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